**영국 감시카메라 관련 제도**

**옮긴 이: 이불쟁이(DSO)**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 이 글은 출처를 명시하는 한 복제·배포·공중송신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글 전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영국에서는 30년 넘게 공공 감시 카메라(폐쇄회로 TV, 즉 CCTV)가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CCTV 카메라를 합친 것보다 영국 내에서 사용되는 CCTV 카메라의 수가 더 많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1998년의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DPA)은 영국 내 CCTV 감시 카메라의 사용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사업에만 적용되며 개인적이거나 가정에서 감시 카메라를 사용하는 개인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와 같은 카메라를 사용하는 개인들은 절대 타인의 사적인 공간을 엿보는 것과 같은 행위를 통해 영국 관음법(British Voyeurism Laws)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는 캐나다나 미국의 관음법과 유사한 것이다. 정보관리청(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은 사업을 위해 CCTV 감시를 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정보보호법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그에 따르면, 사업장 부지 바깥에 있는 이들을 촬영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부지 내에서 카메라가 작동 중이라는 가시적인 표시를 해두어야 하고 이 때 카메라는 최적의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는 장소에만 설치되어야 한다.

기록된 이미지는 반드시 보안된 상태로 저장되어야 하며 해당 사업의 감시 책임자 혹은 법률 집행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들에게는 절대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당신의 사업장이 영상 감시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것들을 정보관리청에서 확인해보라. 만약 카메라가 노동자 감시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화장실이나 개인 사무실처럼 사적인 공간으로 간주되는 곳에는 절대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정보관리청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은밀하고 숨겨진 감시는 예외적인 경우 혹은 피고용인이 수사에서 법집행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 허용된다.

영국에서는 반드시 수사력규제법(RIPA, 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을 따라 감시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력규제법은 전자 통신 감시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수사력규제법은 개인이 본인의 사용에 따라 비밀리에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허가하고 있다. 그 기록을 다른 이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는 불법이 된다. 만약 법정에서 녹음된 대화를 사용하려는 목적 혹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녹음된 기록을 폭로하려는 이유로 녹음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는(he) 반드시 대화가 녹음되는 이의 합의를 구해야 한다.

수사력규제법이 기본적으로 기업에 요구하는 것 가운데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다. 기업의 경우 사업 거래 증거 제출용, 규정 준수를 입증하는 경우, 범죄를 예방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혹은 국가 보안이나 전화 통신망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서라면 합의가 없더라도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 그 외의 목적이 있다면 기업은 반드시 녹음되는 이의 합의를 얻어야만 한다.

CCTV로 피고용인을 촬영하여 감시하는 것에 대한 정보관리청의 가이드라인과 유사하게, 수사력규제법 가이드라인에서도 피고용인의 이메일, 통화와 같은 전자 감시는 감시의 목적에 필수적인 것이라면 은밀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사업의 정식 과정으로서 전화 통화를 늘 녹음하는 기업은 피고용인들에게 녹음되지 않는 개인의 필수적인 통화를 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내무부와 정보관리청은 기업이 영상 혹은 다른 방법으로 감시를 고려할 경우 따라야 할 가이드라인과 검토 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http://worldunderwatch.blogspot.kr/p/camera-laws.html?m=0